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0. 01.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함
-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자원순환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그림 1 - 1)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체계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 시설의설치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 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구조에서 순환경제 정책 추진 중
-경제는 성장하면서 폐기물량은 증가하지 않는 방향(Decoupling)임
- 2015. 12. : EU는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 2018. 01.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공포, ’18.1 시행)
- 2018. 09.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 발표 (환경부)
- 2018. 10.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
- 2019. 11.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

1.4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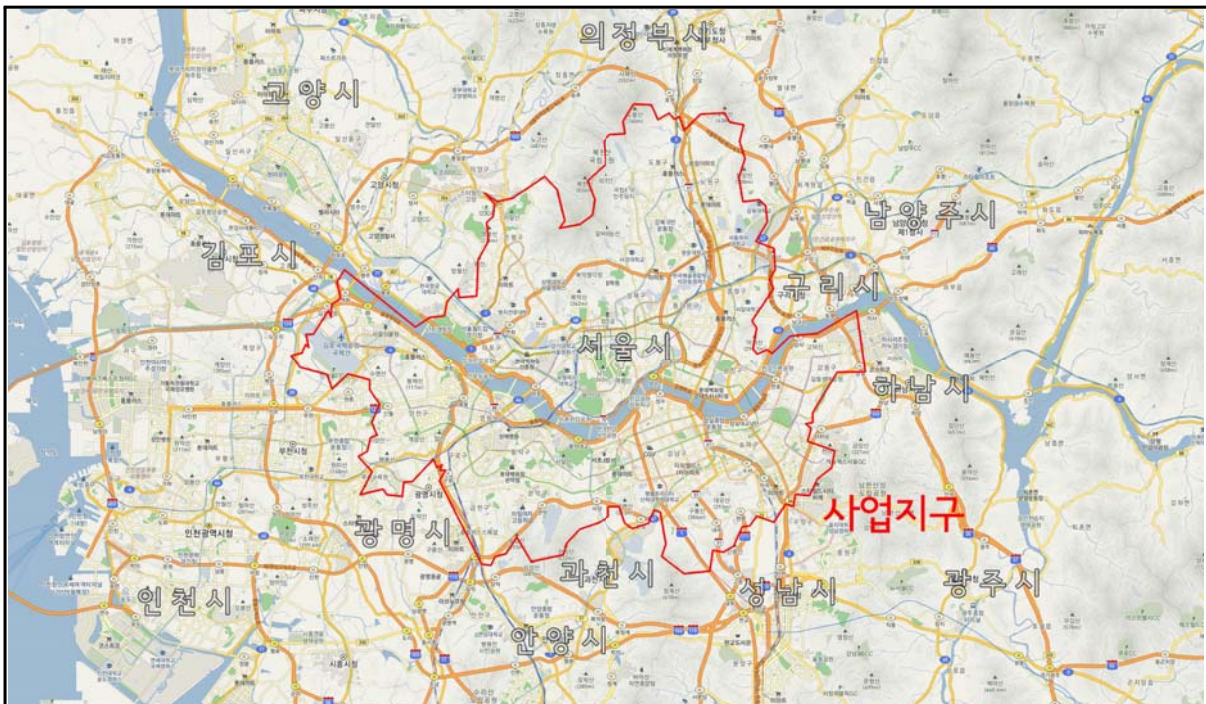
- 서울시 전역

다. 시간적 범위

- 2018년~2022년

라. 계획시행자 : 서울시

마. 승인기관·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1 - 1)

사업지구 위치도

1.5 계획의 내용

가. 비전의 체계

비전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자립 선도도시 서울」
실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위 발생량(톤/년·십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9(2016년) → 41.6(2022년), 5년간 17% 감소 -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4(2016년) → 0.90(2022년), 국가 목표 달성 - 순환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 63.1(2016년) → 63.8(2022년), 국가 목표 초과 달성 · 배출시설계폐기물 : 54.8(2016년) → 62.4(2022년), 국가 목표 개선 비율 준수 · 건설폐기물 : 85.9(2016년) → 87.6(2022년), 국가 목표 달성 · 지정폐기물 : 19.9(2016년) → 19.9(2022년), 국가 목표 개선 비율 준수 - 최종처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 14.9(2016년) → 12.3(2022년), 국가 목표 달성 · 배출시설계폐기물 : 17.7(2016년) → 10.5(2022년), 국가 목표 개선 비율 준수 · 건설폐기물 : 6.6(2016년) → 3.5(2022년), 국가 목표 달성 · 지정폐기물 : 39.3(2016년) → 39.3(2022년), 국가 목표 개선 비율 준수
핵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재생단계 : 순환경제 혁신의 출발점, 서울 - 소비단계 : 자원순환 문화 선도도시 - 관리단계 : 첨단 자원순환 관리 서비스를 누리는 도시
단계별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재생단계 : 순환경제 혁신의 출발점,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신으로 폐기물 원천감량 · 서울형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 · 기업이 주도하는 순환경제 - 소비단계 : 자원순환 문화 선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 생활폐기물 감량 가속화 · 시민참여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 관리단계 : 첨단 자원순환 관리 서비스를 누리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자원순환 자립도시 구축 ·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 · 서울형 청소체계 개선 · 자원순환 정책기반 마련 및 제도개선 · 사업장폐기물의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관리체계 개선 - 생활·사업장폐기물 전 관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관리체계 마련

나. 계획목표(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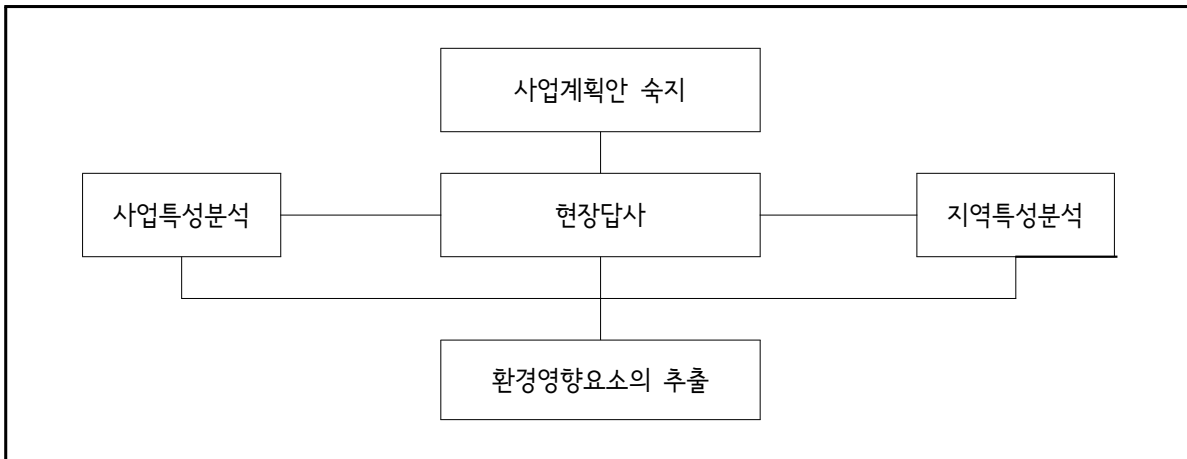
구분		실적		목표					설정 근거
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원단위 발생량									
국내 총생산당 폐기물 발생량	톤/년·십억 원	49.9	49.6	45.3	44.8	43.7	42.6	41.6	2027년 국가목표 초과 달성(20% 감축)
인구당 폐기물 발생량	kg/일·인	0.94	0.91	0.91	0.91	0.91	0.90	0.90	2027년 국가목표(0.86) 달성
순환이용률									
생활폐기물	%	63.1	62.4	63.4	63.4	63.5	63.6	63.8	국가목표 초과달성
배출시설계폐기물	%	54.8	52.2	54.3	56.3	58.4	60.4	62.4	국가 개선을 준수
건설폐기물	%	85.9	86.4	86.6	86.9	87.1	87.4	87.6	국가목표 달성
지정폐기물	%	19.9	17.9	19.9	19.9	19.9	19.9	19.9	국가 개선을 준수
계	%	79.1	79.7	79.5	79.9	80.2	80.6	80.9	
최종처분율									
생활폐기물	%	14.9	15.1	14.8	14.6	14.2	13.3	12.3	국가목표 달성
배출시설계폐기물	%	17.7	22.7	20.2	17.8	15.4	12.9	10.5	국가 개선을 준수
건설폐기물	%	6.6	6.1	5.6	5.1	4.6	4.0	3.5	국가목표 달성
지정폐기물	%	39.3	39.7	39.3	39.3	39.3	39.3	39.3	국가 개선을 준수
계	%	9.2	8.8	8.6	8.0	7.4	6.7	6.0	

제 2 장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 계획의 상위계획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및 주변 인접지역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계획시행시 영향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전반에 걸쳐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관하여는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2.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제반 사업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 인접지역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그림 2.1-1)의 절차를 따라 추출
-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검토함



(그림 2.1 - 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절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공사시 및 운영시 전단계에 걸쳐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기적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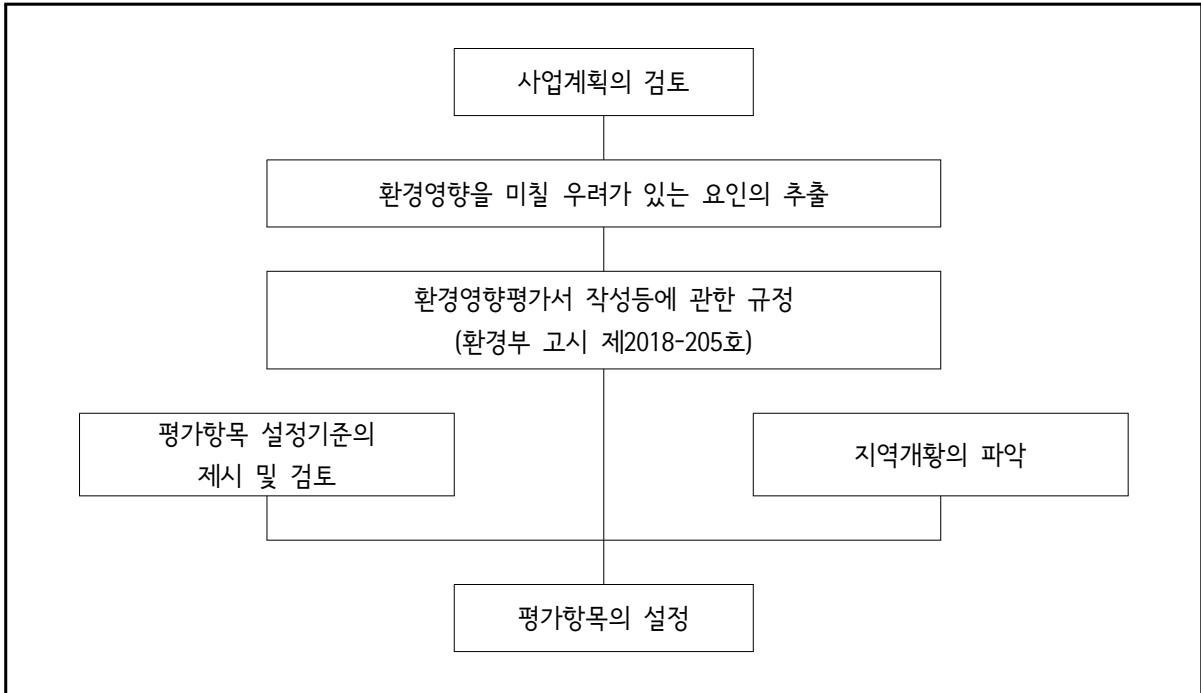
< 표 2.1 - 1 > 사업단계별 환경영향요소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공 사 시	•지하굴착, 공사배수, 공사장비 운용, 기초공사, 건축물 공사, 급배수시설공사, 조경녹화
운 영 시	•오수발생, 폐기물발생, 인구유입, 교통량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2.2 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설정 흐름도

- 환경영향요소와 연계하여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을 설정



(그림 2.2 - 1) 평가항목의 설정 흐름도

나. 평가항목의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4개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분야 4개 항목, 생활환경의 안전성 분야 6개 항목,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분야 3개항목을 설정

< 표 2.2 - 1 >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검 토 항 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기상 및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악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다. 평가항목 설정사유

< 표 2.2 - 2 >

평가항목의 설정(제외)사유

조 사 항 목		설 정 사 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환경정책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확인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계획목표와 반영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영향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에 지형변화를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검토 ◦ 현장근무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파악	
생활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및 대기질	◦ 계획시행 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예상지역 파악 ◦ 계획시행 시 차량이동 및 운영에 따른 대기영향 파악
		온실가스	◦ 계획시행 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 양	◦ 계획시행시 폐윤활유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
		악취	◦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악취 영향 파악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오·폐수, 폐기물 연계처리 여부확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등의 발생량 파악 ◦ 운영시 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파악
사회·경제 환경과의 안전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검토 ◦ 토지이용 계획 등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 시 인구 및 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산 업	◦ 계획시행 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4 환경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 표 2.4 - 1 >

환경영향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구 분		예측·분석기법	관련자료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환경정책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 검토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확인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검토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동식물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변화 및 녹지공간 변화 등 예측	환경자료 및 서울시 자료, 주변지역 평가서 등을 활용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분석	지형도 지질도 및 참고문헌조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변화 검토 ◦ 스카이라인 등 주변 자연지역과의 조화 검토	사업계획서	
	수환경의 보전	◦ 문헌조사,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및 유출 토사농도 산정 ◦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른 오·폐수 부하량 산정	하수도시설기준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생활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및 대기질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상현황 분석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영향 분석 ◦ 연료사용에 의한 대기질 영향 예상 분석	기상연보(기상청) Compilation of Air Pollutants Emission Factors, U.S. E.P.A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사용 및 운영시 연료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측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토 양	◦ 토양측정망 조사, 토양오염유발시설물 현황조사	토양측정망,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소음·진동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 소음·진동 영향예측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2006, 환경부)
		악취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 검토	악취공정시험기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오·폐수, 폐기물 연계처리 여부확인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및 분뇨 발생 현황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폐기물량 산정	건설표준품셈(한국건설기 술연구원)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검토 ◦ 토지이용 계획 등에 따른 환경변화 및 개선방안 검토	통계연보(서울시), 사업계획서	
	인구 및 주거	◦ 기존자료를 통한 인구 및 주거변화 예측 및 기대효과 예측	통계연보(서울시), 사업계획서	
	산 업	◦ 기존자료를 통한 산업변화 예측 및 기대효과 예측	통계연보(서울시),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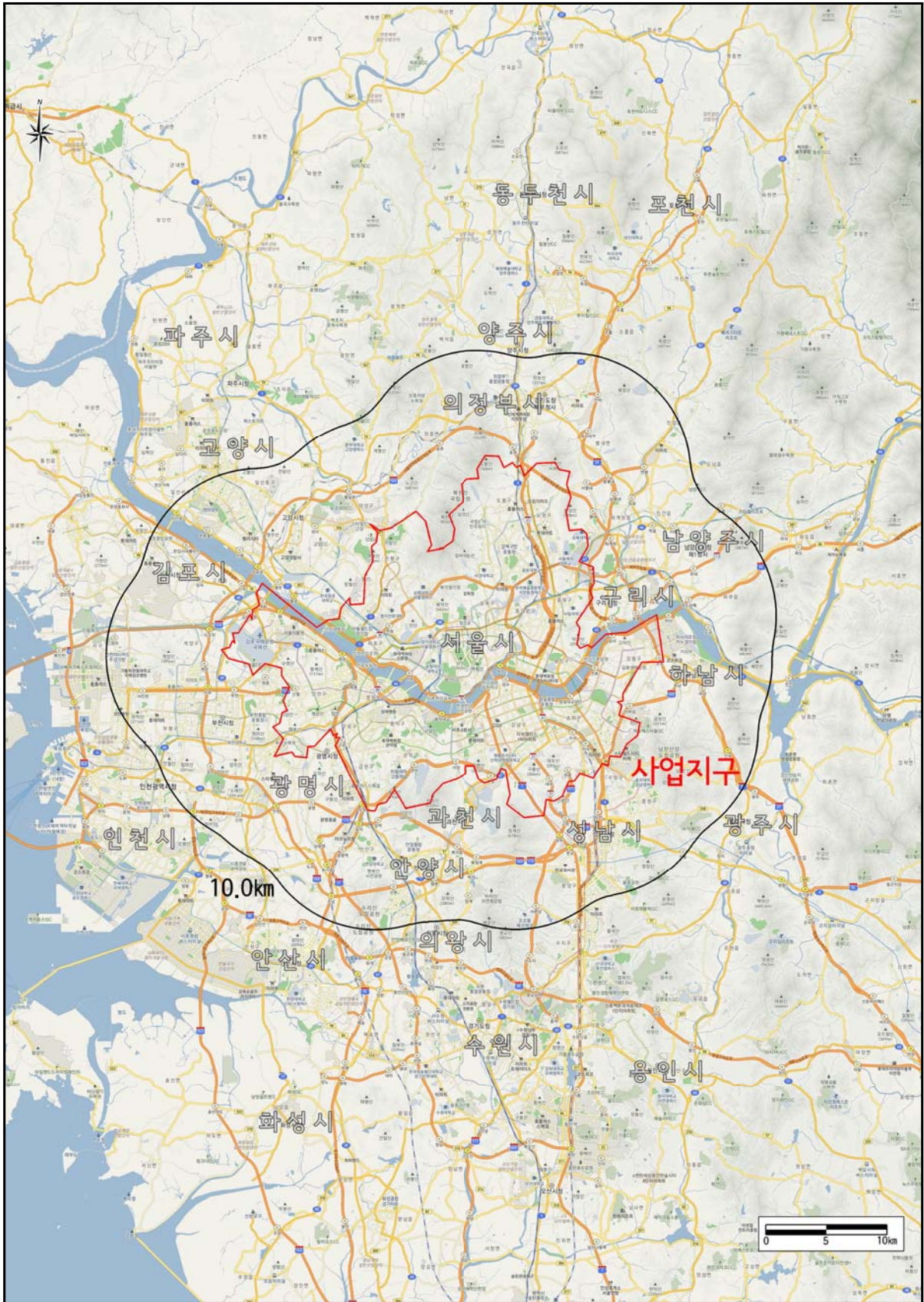
제 3 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시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 지역적 특성 및 환경인자들을 고려하여 설정
- 시행계획 특성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및 증설 설치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바, 평가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으로 설정하였음

< 표 3.1 - 1 >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및 범위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영향분석 범위	
자연환경 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 서식지 변화 및 녹지의 변화	서울시 전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사업지구 내 지형의 물리적 변화	서울시 전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서울시 전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 현장근무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포장면적 변경에 따른 우·오수 발생량 변화	서울시 전역	
생활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및 대기질	○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분석 ○ 건설장비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대기오염물질 발생	서울시 전역
		온실가스	○ 공사장비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서울시 전역
		토양	○ 계획시행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서울시 전역
		소음·진동	○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서울시 전역
		악취	○ 사업지구 주변지역 악취발생시설 조사 및 발생여부	서울시 전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폐기물 처리지역	서울시 전역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및 현장근무인력에 의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 ○ 운영시 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지역	서울시 전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서울시 전역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해 인구 및 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서울시 전역	
	산 업	○ 계획시행으로 인해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서울시 전역	



(그림 2 - 1)

검토대상지역 설정도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4.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가. 협의회 개요

- 계획명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9.11.27.~2019.12.24
- 심의위원 구성 : 9인(위원장 포함)

< 표 4 - 1 >

협의회 위원

구 분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1	위원장	공무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0 0 0
2	위 원	공무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0 0 0
3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 0 0
4		공무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0 0 0
5		공무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 0 0
6		시민대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0 0 0
7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0 0 0
8		민간전문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0 0 0
9		환경단체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0 0 0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문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요청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서면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평가준비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9.12.6.(금)까지 이메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clickclimb@seoul.go.kr)
4. 본 심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김민섭, ☎ 02-2166-3676)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평가준비서 1부(별도송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Redacted]

주무관 [Redacted] 폐기물정책팀장 [Redacted] 자원순환과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967 (2019.11.27.)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비공개(5)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시설 설치 또는 기존시설 보수 시 설정하는 평가항목 범위(대기질 5km 등)가 관할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역 범위까지 확대하여 대상지역을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는 '설정 시 및 미설정 시' 로 단순한 대안을 설정하기 보다 전체 및 부문별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에 대한 복수의 목표치를 추가로 설정하여 실효성 있게 검토 필요(3개 이상 대안 설정) ○ 대안별 세부 검토항목은 위 계획비교의 대안 검토를 통해 선정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하되, 필요 시 입지 및 시기 순서에 대하여 함께 대안 검토 필요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특성 상 오염유발물질이 발생되고 민원에 취약하므로, 평가 항목에 '악취'를 포함 ○ 「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위생·공중보건'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과 더불어 입지가 예정된 경우는 대기, 악취 등 항목의 영향 권역을 가이드라인' 보다 넓게 설정하고, 폭 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필요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13.01. 환경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요약서)를 작성 5.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 18.9. 환경부)' 에 따라 작성한 자원순환시행계획案(요약서)를 첨부 <p style="text-align: right;">2019. 12. . 심의위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검토결과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대안별 세부 검토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분석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지역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구상안은 미확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안의 설정안 2안은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나 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19. 12.2. 심의위원 [인]</p>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
- 사업자/승인기관 : 경기도/환경부
- 계획기간 : 2018년~2022년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18~'27)에 대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 계획('18~'22)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대안

- 대안선정 시 계획비교 외에도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및 시기·순서를 포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변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률 등에 대한 목표치를 달리한 대안 제시 등
- 지역의 폐기물 발생·처리 여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에 필요성에 따른 대안 제시 등

2.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이용현황도 포함되므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 함

- 자원순환시행계획은 대상지역의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연차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발생량(원단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률에 대한 목표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자원순환은 통상적인 폐기물 관리보단 광의의 개념으로 생산-소비-재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계획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의 범위, 기능, 운영주체(컨트론타워)의 명확한 규정 등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여 동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계획과 더불어 입지가 예정된 경우, 대기·악취 등의 영향권역을 폭넓게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

3. 기 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끝.

2019.12.09.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행시에는 해당지역에 따른 환경영향을 광범위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추후 생태 및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을 철저히 평가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이므로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이 되어야 하며, 다만 본 계획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계·시공시에는 그 지역에 따라 주변 및 영향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될 것임
-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위해 환경기준(대기질, 악취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 의견 없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세부 계획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서울시 관내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 처리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폐기물량을 조사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처리물질별 발생량, 설계용량 및 실제 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계획 등의 범위·방법 선정 및 사유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 및 처리방식 조사 제시
 -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인
 - 지자체 내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확인
 - 지자체 내 폐기물 적정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
 -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 시설 파악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고

-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에 본 사업의 목적,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등 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의 충분히 이해·인지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된 홍보물을 20일 이상(토, 공휴일 제외)부착하여 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함

○ 열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일시 및 장소)은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5. 기 타

- 의견 없음

2019. 12. 24.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총괄 의견

- 급변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연차별 시기·순서 총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세부 계획 및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작성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할 경우 연차별 폐기물 증가율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대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세부 계획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특히 2019년 이후 개발·조성·증설이 계획된 도시개발 및 공장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발생량을 예측하여야 함
- 서울시 관내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 처리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폐기물량을 조사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처리물질 별 발생량, 설계용량 및 실제 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나.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계획등의 범위·방법 선정 및 사유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 및 처리방식 조사 제시
 -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인
 - 지자체 내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확인
 - 지자체 내 폐기물 적정처리가 불가할 경우 연계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

-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 시설 파악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내 입주 업체를 상대로 재활용 증진 폐기물 종류 분석 및 해당 폐기물 종류의 재활용시설 현황 조사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가. 광고

-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에 본 사업의 목적,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등 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이해·인지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된 홍보물을 20일 이상 부착하여 사업지구 인근 모든 주민에게 이를 광고

나.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학용어가 사용된 문서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인포그래프(그림, 표 등)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을 별도 비치하는 방안 검토
-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일시 및 장소)은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 일정을 수립

5. 기타

- 의견 없음

2019. 12.1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자연친화적인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자원순환시행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자원순환 체계구축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생태환경 보존 위해 자원순환 범위(도, 시, 구 간)를 상세하게 함이 중요
-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위해 환경기준(대기질, 온실가스, 토양오염, 소음진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 경제, 환경의 조화성을 위해 주거지역을 피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시설을 설치해야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 공공선별장을 점차적으로 구별 1개씩 설치되도록 확충 필요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점차 6개소 정도 신설하여 강력화할 필요성 있음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기반시설은 계속적으로 증설, 보완, 신설함이 필요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기초시설 적절성 추가:

1) 도로 및 교통순환에 지장 여부 파악

2) 폐기물 오염인식 여부 파악

○ 친환경적 자원순환 추가: 건설 및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 파악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의견 수렴

5. 기 타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실천으로 순환이용률은 높아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

2019. 12. 6.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행시에는 해당지역에 따른 환경영향을 광범위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추후 생태 및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을 철저히 평가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등이 생활주변에 넓게 분산 분포되어 있어 이의 보전과 유지관리가 중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이므로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이 되어야 하며, 다만 본 계획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계·시공 시에는 그 지역에 따라 주변 및 영향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될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 의견은 없으나 글자수정을 요함.

- 48페이지 <표 5.3-1> 대안1의 단점 칸의 '2019년' → '2018년'으로 수정

- 49페이지 <표 5.4-1> 검토내용 칸의 대안2의 '국가환경계획' →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필요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활의 안전성 평가 및 조사항목에서,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음식물류적환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추가검토 요망.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기 타

○ 본 계획은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이고 본 시행계획에는 3.2 토지이용 구상안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료 제4장 지역개황 4.5 환경기초시설 현황에 현재의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현황을 별도로 명확히 명시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검토요망.

2019. 12 . 02 .

심의위원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주민의견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 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구 및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겠음
- 본 계획의 설명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기간내 개최하며, 설명회 일시와 장소 개최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및 공람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음
- 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생략될 수 있음

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동안 대상지역 주민 및 기타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본 행정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제시하여 반영여부를 공개토록 하겠음

마.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